

□ 대학생 소득구간별 점수산정 기준

○ 당해학기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한국장학재단} 기준

소득구간	산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50점
1구간	47점
2구간	44점
3구간	41점
4구간	38점
5구간	35점
6구간	32점
7구간	29점
8구간	26점
9구간	23점
10구간	20점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변경 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여 점수 산정기준 마련 (제1차 녹색장학사업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 가점 산정 기준

○ 고등학생

가점대상	산정기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점

○ 대학생

〈실적인정 예시〉

- (예시1) 지역 공부방(또는 지역 아동센터) 학습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멘토로 활동
- (예시2) 산촌 지역에서의 교육 활동(귀산촌 교육 등)
- (예시3) 기타 상기 예시 1~2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자원봉사활동

당해년도 봉사활동 실적 인정시간	산정기준
30시간 초과	3점
20시간 이상~30시간 이하	2점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1점

* 실적확인서: 136자원봉사포털,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누리집에서 확인서 또는 봉사활동에 참여한 기관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당해년도 실적에 한해 인정)

□ **학업장학금**

○ (1차서류) 장학금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고등학생 유형	산림·임업인 본인 및 자녀 (6종)	① 장학금신청서(서식2)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서식3) ③ 산림·임업인 증빙서류([붙임4] 참조) ④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표기 ⑤ 전체학기 성적증명서 ⑥ 재학증명서 ※ (해당 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필요
	산림·임업 전공자 (4종)	① 장학금신청서(서식2)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서식3) ③ 전체학기 성적증명서 ④ 재학증명서 ※ (해당 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필요 ※ 전공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적격여부 확인서(서식8)
대학생 유형	산림·임업인 본인 및 자녀 (8종)	① 장학금신청서(서식1)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서식3) ③ 재학증명서 ④ 등록금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 ⑤ 산림·임업인 증빙서류([붙임4] 참조) ⑥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표기 ⑦ 전체학기 성적증명서 ⑧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 (해당 시) 봉사활동 실적 확인서 제출 필요
	산림·임업 전공자 (6종)	① 장학금신청서(서식1)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서식3) ③ 재학증명서 ④ 등록금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 ⑤ 전체학기 성적증명서 ⑥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 (해당 시) 봉사활동 실적 확인서 제출 필요 ※ 전공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적격여부 확인서(서식8)

○ (2차서류) 장학생 선발 이후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고등학생 유형(2종)	① 장학금 반환 서약서(서식4), ② 상품권 수령증(서식6)
대학생 유형(3종)	① 장학금 반환 서약서(서식4), ② 통장사본, ③ 신분증 사본

※ 2차 제출서류는 장학생 선발자에게만 해당되는 서류로 장학생 신청 시 제출 불필요

□ 일자리장학금

○ (1차서류) 장학금 신청 시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근로장려 유형 (5종)	① 장학금신청서(서식9) ② 취업 활동실적 및 계획서(서식10)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서식13) ④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4대보험 가입 증명서로 대체 가능) ※ 발급 시 조회기간은 취업일로부터 신청서 제출일을 포함하여 조회 및 발급 ⑤ 재직증명서(또는 근로계약서) ※ 반드시 기업(또는 단체)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증명서로 제출 ※ 근무지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적격여부 확인서(서식11)
창업장려 유형 (4종)	① 장학금신청서(서식9) ② 창업 활동실적 및 계획서(서식10)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서식13)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 창업기업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적격여부 확인서(서식12)

○ (2차서류) 장학생 선발 이후 제출 서류(취업자·창업자 공통 3종)

구분	제출서류
근로장려 유형	① 통장사본, ② 신분증 사본, ③ 장학금 반환 서약서(서식4)
창업장려 유형	

※ 2차 제출서류는 장학생 선발자에게만 해당되는 서류로 장학생 신청 시 제출 불필요

붙임3

산림·임업인 기준 및 증빙서류

연번	구분	세부기준	증빙서류
1	임업인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임업인 가.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자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아 그 계획대로 임야를 경영하는 자)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산림경영계획 인가 내역서 포함)
		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관련 회사에 고용되어 임업에 종사)	임업관련 법인 또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고용·산재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급여명세서 등 中 택 1
		다. 임업 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납품확인서 * '25년 1월 이후 발행
		라.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자	① 조합원 증명서와 ② 위의 가~다 증빙서류 중 택 1, 또는 종묘생산업자 등록증 * ①, ② 모두 제출
2	임업 후계자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가. 5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 하려는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①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인 독립가의 자녀 ②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고 있는 사람 ③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수익분배림 (분수림)을 설정받은 사람 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사람	임업후계자증서
3	독립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의한 독립가 가. 개인독립가(個人篤林家) ① 모범독립가 : 300ha 이상의 산림{수익분배림(분수림) 및 조림 (造林)의 목적으로 대부받은 국유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조림 실적이 100ha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 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② 우수독립가 : 100ha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조림 실적이 50ha 이상 {유실수(有實樹)는 20ha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 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③ 자영독립가: 5ha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유실수를 3ha 이상 조림하여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모범, 우수, 자영, 법인) 독립가 증서

연번	구분	세부기준	증빙서류
3	독립가	<p>나. 법인독립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p> <p>① 300ha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 실적이 100ha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p> <p>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중 10ha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 실적이 5ha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p>	(모범, 우수, 자영, 법인) 독립가 증서
4	영림 단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기능인·기계화 영림단에 소속되어 종사하는 자	영림단원 확인서
5	신지식 임업인	창의적 발상으로 새로운 임업분야를 개척하거나 타 분야 첨단기술을 임업과 접목하여 고소득을 올리는 자 등 일정 심사를 거쳐 산림청의 선정을 받은 자	신지식임업인 증서
6	생산자 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호 및 제5호의 생산자단체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어야 함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조합)설립인가증 등 中 택 1 제출
7	임업 경영체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	<p>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며 산림청을 통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p> <p>* 임산물</p> <p>1)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밖의 임산물: 1천제곱미터 이상</p> <p>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p> <p>3)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p> <p>4)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제1항1호에 따라 등록된 자</p> <p>5) 1)~4)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3만제곱미터 이상</p>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8	산림 복지 전문업 · 서비스 제공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산림복지전문업 또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대표와 해당 업에 종사하는 자	(대 표) 전문업 등록증 (종사자) 재직기관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中 택 1 제출

붙임4

산림·임업 관련 기업 및 단체 예시

□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기준 내 임업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세부내용
임업(020)	<p>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 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을 포함한다. 산림 내에서 자기가 직접 채취한 재료로 숯 굽기, 수액의 증류 및 농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영림활동으로 분류하지만 구입한 재료로 수액을 증류, 농축하거나 숯을 굽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p>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입 목재를 이용한 목탄(숯) 및 목타르 제조(20112) ·천연 고무나무 재배(01140) ·수목원, 식물원 및 야생식물 보호 관리 서비스(9023) ·휴양림 관리, 운영(9023)
영림업(0201)	<p>산림용 종자 및 묘목 생산, 조림 및 육림, 산림 보호, 자영 산림 내에서 야생 수액 및 야생 임산물을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임업용 종묘 생산업(02011)	<p>조림 및 육림 등 임업용 수목의 종자 및 묘목을 생산 또는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예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업용 묘목 생산 ·임업용 종자 생산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업용 이외의 종묘 생산(01123)
육림업(02012)	<p>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예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목지 운영 ·자영 산림 내에서 임업 부산물 생산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물원, 수목원 관리 운영(9023)
벌목업(0202)	<p>원목과 연료용 목재를 벌목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예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목 생산 / 연료용 나무 생산 / 벌목업자 / 화목 생산
임산물채취업(0203)	<p>자연적으로 번식·생장하는 각종 용도의 야생 식물 및 식물성 물질을 채취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야생 딸기, 버섯, 송로 및 견과 등 식용 가능한 야생 식물을 채취하는 활동도 포함한다.</p> <p>〈예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연 검 및 수지 채취 ·쿠션, 매트리스 등 충전용 식물성 재료 채취 ·천연 코르크 채취 ·편조물용 식물성 재료 채취 ·야생 딸기, 버섯, 송로 및 견과 등 식용 야생 식물 채취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배한 고무나무에서 천연고무 라텍스액 채취(01140) ·임업사업자를 대리한 임산물 채취·정리활동(02040) ·육림업자가 자영 산림 내에서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경우(02012)
임업관련서비스업(0204)	<p>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영림 및 벌목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p> <p>〈예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불 방지 서비스 ·산림 병충해 방지 서비스 ·산림 경비 및 보조 서비스 ·수목 조사 및 평가 서비스 ·목재 운반 및 이동 서비스(벌목장 내)

□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산림치유업,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산지도업 종합산림복지업)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 및 단체인 경우

□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 및 단체인 경우

□ 산림청 소관 비영리 법인 및 민간 단체

○ 특수법인(12개)

연번	단체명	연번	단체명
1	산림조합중앙회	7	목재문화진흥회
2	한국산지보전협회	8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3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9	한국산림복지진흥원
4	한국치산기술협회	10	한국수목정원관리원
5	한국임업진흥원	11	한국산림기술인회
6	한국산림토석협회	12	한국나무의사협회

○ 재단법인(13개)

연번	단체명	연번	단체명
1	천리포수목원	8	한국숲
2	LG상록재단	9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3	늘푸른영농재단	10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4	서울그린트러스트	11	산림힐링재단
5	소호문화재단	12	재단법인 나눔
6	화천군청정산업진흥재단	13	재단법인 이숲
7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 사단법인(214개)

연번	단체명	연번	단체명
1	한국양묘협회	13	한국수목보호협회
2	한국합판보드협회	14	한국자생식물협회
3	한국조경수협회	15	한국산림보호원
4	한국포플러·속성수위원회	16	한국임산버섯생산자단체연합회
5	한국산림정책연구회	17	한국산지환경연구회
6	한국산림경영인협회	18	한국임업후계자협회
7	한국임산물연료협회	19	한국목조건축협회
8	한국산악회	20	한국산림보호협회
9	한국목재칩연합회	21	자생식물단체연합회
10	대한민국자생란협회	22	한국임업기계화협회
11	한국숲사랑청소년단	23	한국산림자원육성운동협회
12	한국분재조합	24	생명의숲

연번	단체명	연번	단체명
25	한국자생식물보존회	62	한국등산연합회
26	한국임산탄화물협회	63	한국표고버섯생산자협회
27	한국산림유기자원협회	64	한국산림경제학회
28	산지약용식물협회	65	산림문화콘텐츠연구소
29	평화의숲	66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30	나라꽃무궁화운동중앙회	67	유명산숲학교
31	한국숲해설가협회	68	한국산림휴양복지협회
32	아시아태평양산림포럼	69	한국해안림연구회
33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70	노거수회
34	생태산촌	71	백두대간연구소
35	광릉숲보존협회	72	백두대간진흥회
36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73	한국산림치유포럼
37	새천년생명운동	74	숲길
38	한국꽃누르미협회	75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39	한국아트플라워협회	76	숲사랑
40	한국닥나무협회	77	한국호두생산자협회
41	한국밤재배자협회	78	한국DIY가공방협회
42	한국수액협회	79	수목장문화연대
43	한국보호수보존연구회	80	한국시설양묘연구회
44	대한산악스키협회	81	미래숲
45	한국목재보존협회	82	한국잔디협회
46	한국온새미로편백숲협회	83	숲연구소
47	한국산림과학기술단체연합회	84	대한목재협회
48	한국표고생산·유통협회	85	한국목재공학회
49	한국산림공학회	86	무궁화문화포럼
50	한국사유림발전연구회	87	한국산림문학회
51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88	한국밀원수조림육성협회
52	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	89	한국산림기술사협회
53	한국산악문화협회	90	한국수목보호기술자협회
54	한국산림과학회	91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55	한국나무병원협회	92	한국산양삼협회
56	한국새우란협회	93	한국목공교육협회
57	한국식물세밀화협회	94	대한산악구조협회
58	숲생태지도자협회	95	한국대학산악연맹
59	숲과문화연구회	96	곤충다양성연구회
60	한국산악승마협회	97	한국산악마라톤연맹
61	한국산삼학회	98	백두대간보전회

연번	단체명	연번	단체명
99	한국숲유치원협회	136	숲태교연구협회
100	한국임우연합	137	한국정원협회
101	한국잔디학회	138	한국수목장협회
102	한국산림유전·생리학회	139	산림형 사회적경제협의회
103	백두대간숲연구소	140	숲을 찾는 사람들
104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141	대한트레일런협회(KTRA)
105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142	더-좋은 나무만들기
106	한국트레킹연맹	143	속리산둘레길
107	야생자원식물 소재연구회	144	산림보호통신원협회
108	숲과 아이들	145	한국소나무보호협회
109	산림경영정보학회	146	산촌생태마을 전국협의회
110	한국고열처리협회	147	생태문화포럼
111	한국숲길등산지도사협회	148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112	한국무늬목협회	149	우디즘 목재이용연구소
113	나무심는 사람들	150	산림환경포럼
114	한국원목생산업협회	151	이음숲
115	한국종자은행자원보전협회	152	사단법인 대한민국무궁화예술협회
116	한국무궁화연구회	153	사단법인 한국자생식물생산자협회
117	한국마루협회	154	사단법인 한국식물보전네트워크
118	생태창의성 연구소 푸른상상	155	숲사랑산사랑
119	한국목공인협회	156	나눔정원가든제이
120	한국산림습원보호협회	157	한국성형목탄협회
121	푸르네정원문화센터	158	한국목재시설물협회
122	팔공산문화포럼	159	산림자원육종가협회
123	한국식물분류학회	160	한국숯유통협회
124	한국사찰림연구소	161	한국산림휴양경관협회
125	한국대나무발전협회	162	사단법인 한국산서회
126	세계녹화연합	163	사단법인 한국산림탄소협회
127	산지포럼	164	사단법인 전국무궁화생산자 협회
128	한국유아숲지도사협회	165	한국산림치유지도사협회
129	전국대학학술림 협의회	166	한국뽕은감협회
130	한국산림보호협력센터	167	광릉숲친구들
131	한국숲교육협회	168	한국민간정원협회
132	한국전통참숯협회	169	한국뽕은감생산자협회
133	한국WPC산업협회	170	한국숲사랑총연합회
134	숲과아동 청소년교육	171	사단법인 우리꽃무궁화교육원
135	한국아보리스트협회	172	남북산림협력포럼

연번	단체명	연번	단체명
173	대한동백협회	194	대한민국풍란연합회
174	365산림화재예방협회	195	한국트리플레이밍협회
175	한국야생식물가꾸기협회	196	한국트리하우스협회
176	산림휴양협회	197	한국산림행정학회
177	한국가로수협회	198	한국산림복지전문업협회
178	한국수목치료기술자협회	199	국제정원관광네트워크
179	한국산림환경운동본부	200	한국코르크산업협회
180	한국산림복원협회	201	한국바이오WPC산업협회
181	한국생활정원진흥회	202	한국산불학회
182	한국산촌재생본부	203	사단법인 정원다움
183	한국국산목재제협회	204	한국산악교류협회
184	시민정원문화협회	205	목림삼(木·林·森)연합혁신정책포럼
185	한국목수협회	206	나무가심는내일
186	한국임업인총연합회	207	한국임업발전협회
187	한국정원문화협회	208	한국흰개미대책협회
188	임산물 수출연합회	209	국산목재이용기술협회
189	한국무궁화재배관리연합회	210	왕벚프로젝트2050
190	무궁화연대	211	한국정원관리사협회
191	한국석재협회	212	한국정원사협회
192	한국레드플러스협회	213	대한호두협회
193	대한민국야생초협회	214	한국해안숲보전협회

※ 산림청 소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 단체 현황 기준('25. 2.)

□ **대학교 52개교, 85개 학과('24년 녹색장학사업 기준)**

연번	대학교명	전공명	연번	대학교명	전공명
1	가천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 조경학전공	31	대구한의대학교	치유산업학
2	가톨릭관동대학교	산림치유학	32		산림비즈니스학
3	강릉영동대학교	산림휴양레포츠학	33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식물생활조경학
4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	34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
5	강원대학교	산림경영학	35		조경·정원디자인학부
6		산림자원학	36	동신대학교	산림조경학
7		산림환경보호학	37	동아대학교	조경학
8		목재과학	38	목포대학교	도시계획 및 조경학부 조경학전공
9		종이소재과학	39		원예산림학부 산림자원전공
10		생태조경디자인학	40	배재대학교	원예산림학
11		건국대학교	산림조경학		41
12	경남정보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	42	부산대학교	조경학
13	경북대학교	임학	43	상지대학교	조경산림학
14		임산공학	44	서울대학교	산림환경학
15		조경학	45		환경재료과학
16		산림생태보호학	46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조경전공
17	경상국립대학교	산림환경과학부	47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
18		환경재료과학	48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
19		조경학	49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조경학전공
20	구미대학교	도시조경디자인	50	세계사이버대학교	환경조경원예학
21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	51	송곡대학교	산림융합과
22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	52	순천대학교	산림자원학
23	나주대학교	토목조경	53		조경학
24	공주대학교	산림과학	54	신구대학교	정원문화산업학
25		조경학	55		정원문화산업전공
26	국민대학교	산림환경시스템학	56		환경조경과
27		임산생명공학	57	국립경국대학교	산림과학과
28	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	58	영남대학교	산림자원학
29	대구대학교	산림자원학	59		조경학
30		조경·정원디자인학	60	우석대학교	조경학과

연번	대학교명	전공명	연번	대학교명	전공명
61	우석대학교	산림조경원예학	74	연암대학교	스마트원예계열 환경조경전공
62	원광대학교	산림조경학	75	충남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
63	전남대학교	산림자원학	76		환경소재공학
64		조경학	77	산림학	
65		임산공학	78	충북대학교	목재종이과학
66	전북대학교	산림환경과학	79		식물자원학
67		목재응용과학	80	한경국립대학교	식물자원조경학부 조경학전공
68		조경학	81	한국농수산대학교	작물·산림학부
69		생태조경디자인학	82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자연숲치유산업학
70	청주대학교	조경학	8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조경학
71	전주기전대학교	허브조경과	84	호남대학교	조경학
72		산림치유과	85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73	중부대학교	환경조경학			

※ ‘산림청 누리집-산림정책-산림일자리-교육훈련기관-산림관련대학’, 커리어넷(진로정보방)을 참고한 예시이며, 녹색장학사업 운영위원회의 전공 적격여부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고등학교 31개교, 38개 학과('24년 녹색장학사업 기준)

○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연번	고등학교명	전공명	연번	고등학교명	전공명
1	강릉중앙고등학교	조경과	20	전북인공지능고등학교	생태조경과
2	경남산업고등학교	조경원예과	21	용인바이오고등학교	조경디자인과
3	고양고등학교	도시조경디자인과	22	울산산업고등학교	생태조경과
4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식물과학과	23		그린스마트팜과
5	광주중앙고등학교	조경과	24	이천제일고등학교	조경원예과
6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조경관리과	25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친환경원예경영과
7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원예조경과	26	전남자연과학고등학교	정원산업과
8	남원용성고등학교	식물자원과	27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산림조경과
9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	도시조경과	28	제주고등학교	관광그린자원과
10		도시공간조경	29	주산산업고등학교	조경과
11		그린바이오산업과	30	창녕슈퍼텍고등학교	스마트원예과
12	동래원예고등학교	산림자원과	31	천안제일고등학교	원예조경과
13		도시조경과	32	청주농업고등학교	산림환경자원과
14	문산제일고등학교	조경원예과	33		조경과
15	서산중앙고등학교	원예조경과	34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특용원예과
16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생물자원학과 조경전공	35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산림환경자원과
17	여주자연농업고등학교	산림조경과	36		임산가공과
18	영서고등학교	생활원예과	37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도시조경디자인과
19		조경디자인과	38	함양제일고등학교	조경토목과

※ 위 학과는 ‘교육청-HIFIVE 학교별 학과정보’ 기준에 따른 산림·임업관련 전공(고등학교) 예시이며, 녹색장학사업 운영위원회의 전공 적격여부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아래 학과 및 과목과 동일하지 않으나, 유사한 명칭의 학과 및 과목인 경우, [별지7]^{대학생}, [별지8]^{고등학생} 제출(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함)

□ 산림치유지도사 1, 2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에서 인정하는 산림 관련 학과 및 과목의 기준을 준용함

○ (관련학과) 현재 인정되고 있는 산림 관련 학과

계열		학 과 명
산림 (49)	산림 자원	산림학과, 산림경영학과, 산림자원학과, 산림환경보호학과, 산림과학과, 산림환경 자원학과, 생태환경보전학과, 임산공학과, 임학과, 환경임산학과, 환경생태공학과,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산림환경학과, 환경재료과학과, 산림치유학과, 산림비즈니스 학과, 산림환경과학과, 환경소재공학과, 산림자원학 및 조경학 전공, 산림소재공학 전공,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임산가공학과
	원예	원예학과, 환경원예학과, 원예과학과, 원예생명공학과, 원예육종학과, 원예화훼학과, 화훼원예학과, 원예치료학과, 원예생명과학과, 원예생명조경학과
	조경	조경학과, 환경조경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플라워조경디자인과, 녹지조경학과, 녹지환경계획과, 산림조경학과, 생태조경디자인학과, 도시환경조경과, 전통조경학과
	기타	식물의학과, 식물자원응용공학과, 식물자원학과, 식물자원환경학과, 농생물학과, 식물시스템과학과, 녹색기술융합학과

○ (연관과목) 현재 인정되고 있는 산림 관련 유사과목

- 아래 연관과목 중 3개 이상 해당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 관련학과로 인정

계열	과 목 명
산림 (45)	산림휴양학, 산림치유학, 임산생명공학개론, (산림)생태학, (환경·산림)토양학, 목재화학, 원예치료학, 산림보호학, 산림자원측정학, 산림자원학, 산림경제학, 산림정책학, 산림 경영학, 수목학, 조림학, (수목·식물·작물·재배식물)생리학, 조경관리학, 조경학개론, 임학개론, 산림과학개론, 원예학, (원예·식용·특용)작물학, 재배학, 조경수목, 산림환경보전, 조원식물학, 자원식물학, 산림치유인자, 수목병리, 수목해충, 조경수목관리학, 건강과 도시원예, (조경)식물학, 식물생태학, 숲과건강, 야외휴양학, 생태조경학, 생태조경 관리학, 임업경제학, 숲과인간, 산림자원정책학, 숲치유계획 및 활동론, 숲치유론 및 실습, 식물과학

※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과목명에 ‘학’, ‘~(개, 원, 범, 본, 특)론’, ‘일반’, ‘기초’, ‘임상’, ‘고급’, ‘최신’, ‘응용’, ‘실(험, 습, 무)’, ‘연(습, 구)’, ‘세미나’, ‘과제’ 등이 붙는 경우 동일교과목으로 인정

붙임7

선발제외 및 중복수혜 불가 기준

○ 학업장학금, 일자리장학금은 관공서(정부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산림청 관련 특수법인,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 불가함

○ 당해년도 내 녹색장학사업 타 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 1개 유형만 가능

· (예시) 학업장학금 신청자가 일자리 장학금 중복 신청 불가

○ 타기관 장학금과 녹색장학금의 합이 3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함

· (예시) 2학기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3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녹색장학사업 장학금 지원 불가

※ 불가사유: 타 기관에서 받은 장학금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이므로, 녹색장학사업
최대 지원금액 초과

○ '학업 장학금(대학)'은 등록금(수업료) 실비 이상 타 기관 장학금과의 중복 수혜 불가 ※ 중복수혜검토: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활용

· (예시1) 2학기 등록금 실비 270만원-기수령금 260만원=차액 10만원을 녹색장학으로 지원

· (예시2) 2학기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29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2학기 등록금 실비 320만원-기수령금 290만원=차액 3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

○ 과거 수혜 이력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장학금은 재신청 불가

· (예시) 고등학교 학업장학금 수혜자는 추후 대학학업장학금 및 일자리 장학금 신청 가능

○ '학업 장학금-산림·임업인 본인 및 자녀'의 경우 동일 가구 내 2인 이상 지원 불가 ※ 동일가구 내 1인만 인정

○ '일자리 장학금'은 타 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은 경우 중복수혜 불가

· (예시) 타 기관 취·창업 성공수당 등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불가

○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하거나 허위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

○ 기타 위원회에서 지급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 제외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장학생의 일체 행위에
대해 장학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정이익금의 최대 5배) 등 법적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함